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5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7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의 안	708
번 호	

제출년월일 : 1999. 1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의 확대배치와 관련 정원이 증원 책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1,242명을 1,259명으로 17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218명 ▶ 1,235명(+17명)

나. "정원에 관한 적용례"로서 부칙 조항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정원표(「표1」, 「표2」)의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에 각각 17명을 증원함(안 부칙 제2조)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시달(서울시 조직12200 - 79, '99. 10. 5)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242명”을 “1,259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218명”을 “1,235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36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45명 24명

[표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1,31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89명 24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인(집행기관의 정원 3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6인(집행기관의 정원 5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4인(집행기관의 정원 5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242명</u> 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259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218명</u>	1. ----- : <u>1,23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2. ----- : ---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09
----------	-----

제출일자 : '99. 1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날로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는 생활체육행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활체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구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별정직지도사 7급 상당 임용자격기준 항목에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신설

3.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
-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별표1)
 - 행정관리분야 지도사 7급 상당 임용자격기준 제5호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의 【별표1】 중 6. 행정관리분야의 지도사 7급상당 임용자격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1] <u>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u> 1.~5. (생 략) 6. 행정관리분야					[별표1] <u>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u> 1.~5. (현행과 같음) 6.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지도사	6 급 상당	(생 략)			지도사	6 급 상당	(현 행과 같음)		
	7 급 상당	(생 략)	1.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신 설>			7 급 상당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4년제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이상인 자	
공과금요원	(생 략)				공과금요원	(현행과 같음)			
7.~9. (생 략)					7.~9. (현행과 같음)				

3.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10
----------	-----

제출년월일 : '99. 1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생활체육시설 제공 등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종전의 관련규정을 재정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명변경

종전의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조, 안 제2조)

○ 관리 및 운영, 비용부담, 운영위원회 운영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 사용료 징수 및 운영, 입장료 징수 및 제한 등(안 제7조 내지 제11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 제135조

4. 예산수반사항 : 예산조치 필요

5.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22번지 8호로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회관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4조(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관승인 및 임대사용허가) ①구청장은 회관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승인하거나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대관 및 임대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등) 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상시이용자의 경우는 회비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종로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 3.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의 보호나 지원을 받는 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 4. 구위선양과 체육진흥,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5.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대관 등 사용승인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행사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9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③제1항의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2. 만취자 또는 의식이 불명한 자
-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1조(감독)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종로구 구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대강당	영화,공연 및 기타행사	80,000원	1. 1회 단가임 2.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함 (단,결혼식의 경우 1시간 이내)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함 4.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5. 공연 및 기타행사 연습시 기준액의 50%로 함
	결혼식	50,000원	
대회의실	행 사	30,000원	
소회의실	행 사	10,000원	
전 시설	전 시	30,000원	

2. 교육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프로그램 일사용료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컴퓨터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1. 1회 단가임 2.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3.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단 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피아노	1 회	10,000원	1.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2. 1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회의실은기준액의 100분의50으로 한다. 5. 무대장치 및 조명연습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음향기기	1 회	10,000원	
영사기	1 회	20,000원	
녹 음	1시간	10,000원	
무대조명	1시간	10,000원	
대강당 냉·난방	1시간	20,000원	

4.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대 상	기 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1일1회)	성 인	2,500	10,500	21,000	31,500	42,000	47,200	53,500
	청소년	1,700	7,100	14,200	21,400	28,500	32,100	36,400
	어린이	1,300	5,400	10,900	16,300	21,800	24,500	27,800
체육관등 (1일1회)	성 인	1,800	7,500	15,100	22,600	30,200	34,000	38,500
	청소년	1,300	5,600	11,200	16,800	22,400	25,200	28,600
	어린이	1,100	4,700	9,500	14,200	19,000	21,300	24,200
탁구장 (단식 1시간)	성 인	1,500	6,300	12,600	18,900	25,200	28,300	32,100
	청소년	1,100	4,700	9,500	14,200	19,000	21,300	24,200
	어린이	1,100	4,700	9,500	14,200	19,000	21,300	24,200
비 고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 탁구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0% ② 탁구장 복식은 단식 기본사용료의 20% ③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①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이상인 경우 주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 기타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회수는 총 주 이용회수를 기준으로 함 ④ 단체(10인이상), 불우청소년, 무의탁노인, 영세민은 30% 5.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4.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11
----------	-----

제출년월일 : '99. 1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99. 2.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 및 일부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조례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며, 동 법률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및 일부내용 수정
 - 법조항 수정 : 조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8조제1항
 - 내용수정 : 조례 제10조제3항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 일부 개정
-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규정된 조항 삭제
 - 조례 제20조제1항, 제2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 삭제
 - 조례 제2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3. 개정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5864호, '99. 2. 8)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6508호, '99. 8. 6)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환경부령 제83호, '99. 8. 9)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규칙 제30조제1항·제3항” 을 “규칙 제30조제1항”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법 제58조제1항” 을 “법 제58조제2항”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의 [별표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업종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분뇨등수집 ·운반업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이상(용량의합계 3,600ℓ 이상) 다. 차고(차량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 하는 인력 2인 이상
정화조 청소업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1대 이상 (용량의 합계 3만ℓ 이상) 다. 차고 (차량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중 1인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 에 종사하는 인력2인 이상

제18조중 “규칙제15조,제18조,제21조및제53조” 를 “규칙제15조,제21조및제53조” 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종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대행업 허가 및 대행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계약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u>규칙 제30조제1항·제3항</u>, 법 제28조제3항 및 <u>규칙 제59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 <u>규칙 제30조제1항</u> ----- ----- -----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 ①(생략)</p> <p>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간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u>법 제58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④(생략)</p>	<p>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통지)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법 제58조제2항</u> ----- -----</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u>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u> 및 <u>제53조</u>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 ----- <u>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u> ----- ----- ----- -----</p> <p>②(현행과 같음)</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1998.11.26></p> <p>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④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종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p>⑤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종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p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되 합산한 과태료의 금액이 법 제58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규정된 금액을 부과한다.</p> <p>나.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중복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다액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p> <p>다.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준하여 금액을 부과한다.</p> <p>라. 제 가호 내지 제 하호의 개별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준하여 금액을 부과한다.</p> <p>마. 제 가호 내지 제 하호에 규정된 과태료금액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법 제58조 제1항 관련(100만원 이하)</p>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1)오수정화시설 B.O.D(mg/ℓ)						
(가)1일처리용량 100m ³ 미만 : 100초과	10	20	50	100		
(나)1일처리용량 100~200m ³ 미만 : 80초과	20	50	100			
(다)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 60초과	50	100				
(2)정화조 B.O.D제거율 (%)						
(가)처리용량 200m ³ 미만 : 50%미만	10	20	50	100		
(나)처리용량 200m ³ 이상 : 50%미만	20	50	100			
(3)축산폐수정화시설 B.O.D(mg/ℓ)						
(가)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자:150초과	50	10				
(나)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자:1,500초과	20	50	100			
나.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오수정화시설의 미신고자						
(가)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0	40	60	100		
(나)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30	60	100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삭 제>	
	1차	2차	3차	4차	5차		
(2)정화조의 미신고자 (가)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	20	30	50			
(3)축산폐수정화시설의 미신고자 (가)1일처리용량 5m ³ 미만 (나)1일처리용량 5m ³ 이상	20	40	60	100			
다. 법 제1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사용한 자							
(1)오수정화시설의 사용 (가)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	20	30	50			
(2)정화조의 사용 (가)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처리용량 200m ³ 이상	5	10	20	30			
(3)축산폐수정화시설의 사용 (가)1일처리용량 50m ³ 미만 (나)1일처리용량 50m ³ 이상	10	20	30	50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위반내용	부과금액(만원)					<삭제>
	1차	2차	3차	4차	5차	
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가)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2)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가)처리용량 200m ³ 미만 (나)처리용량 200m ³ 이상						
(3)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가)1일처리용량 5m ³ 미만 (나)1일처리용량 5m ³ 이상						
마.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는 자						
(1)기능의 정상적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가)오수정화시설 1)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2)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삭 제>
	1차	2차	3차	4차	5차	
(나)정화조						
1)처리용량 200m ³ 미만	5	10	20	30		
2)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	20	30	50		
(다)축산폐수정화시설						
1)1일처리용량 5m ³ 미만	10	20	30	50		
2)1일처리용량 5m ³ 이상	20	40	60	100		
(2)방류수수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가)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10	20	30	50		
1)년1회 측정	20	40	60	100		
2)미측정						
(나)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정화조						
1)년1회 측정	5	10	20	30		
2)미측정	10	20	30	50		
(다)1일처리용량 5m ³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	20	40	60	100		
(3)년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가)오수정화시설						
1)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50	100				
1)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나)정화조							<삭 제>	
1)1일처리용량 0.75m ³ 이하		5	10	20				
2)1일처리용량 5m ³ 이하		10	20	50				
3)1일처리용량 10m ³ 이하		20	50	100				
4)1일처리용량 20m ³ 이하		40	80	100				
5)1일처리용량 100m ³ 이하		100	100	100				
6)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100	100	100	100			
7)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0	100	100	100	100		
(다)축산폐수정화시설								
1)1일처리용량 5m ³ 미만		50	100					
2)1일처리용량 5m ³ 이상		100						
(4)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배출방류수를 소독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5)악취발생 또는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가)오수정화시설								
1)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10	20	30	50			
2)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20	40	60	100			
(나)정화조								
1)1일처리용량 200m ³ 미만		5	10	20	30			
2)1일처리용량 200m ³ 이상		10	20	30	5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삭 제>
	1차	2차	3차	4차	5차						
(다)축산폐수정화시설											
1)1일처리용량 5m ³ 미만	10	20	30	50							
2)1일처리용량 5m ³ 이상	20	40	60	100							
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사용한 자											
(1)설치 또는 변경허가 대상	50	100									
(2)설치 또는 변경신고 대상	30	60	100								
사.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을 위반한 자											
(1)분뇨수집·운반업자	30	60	100								
(2)정화조청소업자	50	100									
아. 법 제35조의3제1항 및 동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자.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 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1)10이내 초과	10	20	30	100		
(2)10~20일 이내 초과	20	40	60	100		
(3)20~30일 이내 초과	30	60	100			
(4)30일 이상 초과	50	100				
차.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30	50	100		
파.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하.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자						
(1)보고하지 아니한 자	20	40	60	100		
(2)허위 보고한 자	30	60	100			

신·구 조문 대비표

원		행		개		정 (안)	
[별표2]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제10조제3항관련)				[별표2]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제10조제3항관련)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차 량	차 고	신고용 진 화	기 타
분뇨 수집 · 운반 업	분뇨의수 집·운반 에종사하 는 인력 2인 이상 운반 업	·법인:5 천만원 이상· 개인:재 산평가 액1억원 이상	전용면 적15㎡ 이상	· 탈취시 설을 갖춘 흡인식차 량1대이상 (용량의합 계3,600ℓ 이상)	· 화물자동차 차운수사업 법예의한최 저보유차고 (대당)-5톤 미만:13㎡ 5톤이상10 ㎡-10톤이 상 : 36㎡	2대이 상	·소독 조1조 이상· 종사원 목욕시 설
정 화 조 청 소 업	수질환경 기사·위 생사·환 경기능사 중1인이 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로서 당해업종 에4년이 상실무에 종사한 자1인이 상·정화 조의청소 에종사하 는 인력 2인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재 산평가 액1억원 이상	전용면 적15㎡ 이상	· 탈취시 설을 갖춘 흡인식차 량1대이상 (용량의 합계 30,000ℓ 이상)·오 니처분용 화물차 1대이상	· 화물자동차 차운수사업 법예의한최 저보유차고 (대당)-5톤 미만:13㎡ -5톤이상1 0톤미만:26 ㎡-10톤이 상:36㎡	2대 이상	·소독 조1조 이상· 종사원 목욕시 설
업종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분뇨등 수집· 운반업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 량 1대이상(용 량의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1 대당 당해 차량 의 길이와 너비 를 곱한 면적 이상)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 는 인력 2인 이상					
정화조 청소업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 량 1대이상(용 량의 합계 3만 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1 대당 당해 차량 의 길이와 너비 를 곱한 면적 이상)	가. 수질환경기 사·위생사·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당 해 업종에서 4 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오수처리시 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 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